

2028 HS

2028년 HS 주요 개정 내용과 신설 품목 분석

[품목분류 동향]

6단위 코드 대폭 확대된 2028년 HS (27p)

[통상 현안 체크]

"위법에 또 위법" 미 국제무역법원,
'글로벌관세 10%' 위법 판결 (13p)

[오피니언: 미국 통관]

"첫 환급 임박" 미 CBP의 IEEPA 관세 환급 상황
(15p)

[이주의 초점]

K-뷰티·푸드도 이제 '주력 수출산업' MTI 코드
6년 만에 개편 (4p)

[위클리 뉴스]

석유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 및
'수입운임 특례' 5월 8일부터 시행
홍콩 수출 소고기·식용란, '수출식품영문증명서'
온라인 출력 가능
미 CBP 원산지 판정, 대미 수출 핵심 변수로 부상 (8p)

[판례 동향]

할당관세 관련 판례 분석 (19p)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5월 11일(통권 제2178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K-뷰티·푸드도 이제 '주력 수출산업'
MTI 코드 6년 만에 개편

관세행정실무해설

- 17** 질의응답사례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 절차

08 Weekly News

판례동향

- 19** 관세판례해설
할당관세 관련 판례 분석

통상 현안 체크

- 13** "위법에 또 위법" 미 국제무역법원,
'글로벌관세 10%' 위법 판결

품목분류동향

- 27** 품목분류해설
"6단위 코드 대폭 확대"
HS 2028 주요 개정 내용과 신설 품목 분석

오피니언

- 15** 시선, 미국 통관
앤드류 박 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LA 총영사관 공익관세사,
ICTC 글로벌통상연구소장
"첫 환급 임박했다"
미 CBP의 IEEPA 관세 환급 상황
-

K-뷰티·푸드도 이제 '주력 수출산업' MTI 코드 6년 만에 개편

AI·소비재·신산업 반영... 반도체는 수출 호황으로 코드 세분화

정부가 6년 만에 수출입 통계 분류체계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전면 개편하면서 한국 수출 지형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기존 제조업 수출 구조에 더해 전기기기·비철금속·농수산물·화장품·생활용품 등 신성장 소비재 품목이 새롭게 '주력 수출품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5월 6일 MTI 코드 기준을 개정하며 기존 15대 주력 수출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현재 산업 및 수출구조를 고려해 주요 품목의 세부 항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 통계 변경을 넘어 한국의 수출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K-소비재, 바이오 산업 확대 등 최근 글로벌 시장 변화가 통계 체계에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반도체·자동차 중심에서 소비재·신산업으로 확대

MTI 코드는 산업부가 우리 산업구조에 맞춰 HS Code를 자체적으로 재분류한 체계다. 세계관세기구(WCO)의 HS Code와 달리 MTI는 무역통계 분석을 위해 제작한 한국형 통계체계다. 현재 HSK 1만 1,327개 코드(10단위)를 1,263개 MTI 코드(6단위)로 재분류해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15대 주력 수출품목을 20대로 확대한 점이다. 새롭게 포함된 품목은 전기기기·비철금속·농수산물·화장품·생활용품 등 5개 분야다.

그동안 한국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관리돼 왔지만, 최근에는 K-뷰티·K-푸드·생활소비재 등 소비재 수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글로벌 전력망 투자 증가로 변압기·전선 등 전기기기 수출도 급격히 증가하는 흐름이다.

실제 산업부가 개정된 MTI 기준으로 분석한 올해 1분기 수출 실적을 보면 신규 편입된 품목들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전기기기 수출은 40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를 넘어섰고, 비철금속은 동·알루미늄 등 광물가격의 상승으로 28.9% 증가한 40억 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소비재 품목도 한류 확산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화장품 수출은 31억 3,000만달러로 21.5% 증가했고, 농수산물도 면류(5억달러, 24% 증가) 등을 중심으로 7.4% 늘어난 31억 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생활용품 역시 문구·완구(7억 8,000만달러, 16.6% 증가) 수출 증가에 힘입어 3.9% 늘어난 21억달러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20대 주력 품목의 전체 수출 비중이 기존 77.2%에서 86.3%로 확대돼, 전체 수출 흐름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2025년 품목별 수출액·증감률·비중 ●

	수출액(억달러)	증감률(%)	수출 비중(%)
15대 품목	5,476	3.7	77.2
전기기기	166.8	8.2	2.4
비철금속	147.1	9.2	2.1
농수산식품	124	6.5	1.7
화장품	114.2	12.2	1.6
생활용품	90	3.9	1.3
20대 품목 합계	6,119	4.2	86.3
전체 수출	7,093	3.8	-

출처: 산업통산부

■ “D램·낸드 세분화” 반도체 세부 코드 개편

이번 MTI 개정으로 반도체·자동차·배터리·바이오헬스 등 주요 산업의 세부 분류체계도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다. 기존에는 집적회로라는 동일 코드 내에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가 혼재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구분해 통계를 제공하고 메모리반도체는 D램과 낸드로 세분화된다. AI 서버 투자 확대와 HBM 중심 메모리 시장 성장 등 최근 산업 흐름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은 AI 서버 투자를 확대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785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D램 수출은 249.1% 증가한 357억 9,000만달러, 낸드는 377.5% 급증한 53억 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시스템반도체 역시 두 자릿수 증가세(121억 1,000만달러, 13.5% 증가)를 이어갔다.

자동차 품목 체계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차종과 파워트레인이 같은 레벨의 코드에 혼재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차종을 상위 레벨(4단위)로, 전기차·내연기관차 등 파워트레인을 하위 레벨(6단위)로 재편한다. 또한 신차와 중고차를 구분해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의 경우 화물차는 63.9% 증가한 7억 1,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승용차는 2.2% 감소(163억달러), 승합차는 31.7% 감소(7,000만달러)하면서 전체적으로 0.3% 줄어든 172억달러를 기록했다.

● MTI 코드 주요 개편 사항 ●

품목	기존 체계의 문제점	개선 방향
반도체	- 동일 코드내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혼재	- 시스템반도체 코드 신설 - 메모리반도체 중 D램, 낸드 구분
자동차	- 일관성 있는 분류체계 부재 - 신차와 중고차 구분 불가능	- (4단위) 차종별, (6단위) 파워트레인별로 재편 - 신차와 중고차 구분
바이오헬스	- 단일코드 부재로 400여 개 코드 합산으로 산출 중	- 바이오헬스 단일코드 신설, 하위 코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구성
철강	-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철강'과 세부항목이 달라 관리상 어려움	- 기타철강재, 원부자재를 철강제품→기타철강금속제품으로 재분류
배터리	- 리튬이온배터리 단일 코드 부재 - 배터리 소재 코드 부재	- 리튬이온배터리 코드 신설 - 배터리 소재(양극재 등) 코드 신설
섬유	- 섬유제품인데도 타 MTI에 혼재	- 가방·신발·벨트 등을 섬유제품으로 변경해 통계의 대표성 확보
일반기계	- 하위 분류가 실제 산업별 분류와 상이해 통계 활용도 저조	- 제조장비, 산업기계, 에너지기계, 기계부품으로 하위 분류 변경

출처: 산업통상부

배터리 분야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 코드가 별도 신설됐다. 양극재·전해액·분리막 등 다른 분류 항목에 흩어져 있던 배터리 소재도 하나의 코드로 통합됐다. 바이오헬스 역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분하는 별도 MTI 코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의료기기는 5.5% 증가한 14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한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주요국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의약품 수출은 11.9% 증가했다(27억 3,000만달러).

철강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철강재와 세부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 철강재에 포함되던 기타철강재, 원부자재 등을 기타철강금속제품으로 재분류했다. 섬유는 섬유소재·제품인데도 농수산식품에 분류되던 천연소재와 생활용품에 분류되던 가방·신발·벨트 등을 이관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개정이 산업 정책 수립과 공급망 전략 분석에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AI·소비재·공급망 시대 반영한 수출 통계 재편

이번 MTI 개정은 한국 수출구조가 기존 중공업·제조업 중심에서 AI·첨단산업·K-소비재 중심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은 2,199억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됐지만, AI 서버 투자 확대와 K-소비재 수요 증가가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 수입은 10.9% 증가, 무역수지는 504억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37억달러 개선됐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 순위도 올해 1~2월 기준(WTO)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로 상승했다.

다만 산업부는 향후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이 수출 환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의 올해 1분기 수출 증감율은 139.1%이며, 반도체를 제외한 증감율은 11.6% 정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1분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며, “무역금융과 수출보험 확대,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6월 1일부터 MTI 코드 개정사항을 무역통계 서비스(K-stat)에 반영할 계획이다. 통계 해석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이후 데이터에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최신 HSK-MTI 코드 연계표를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김성은 기자 |

품목명	하위 분류체계(기존)		하위 분류체계(변경)	
반도체	집적회로	메모리반도체, 증폭기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등	메모리반도체	D램, 낸드, S램, 기타
	집적회로부품		시스템반도체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증폭기 등
	개별소자		개별소자반도체	
	개별소자부품			
	실리콘웨이퍼		실리콘웨이퍼	
자동차	승용차	1,500cc 이하, 1500cc 이상 초과 등	트랙터	
	화물자동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기타	승합차	
	특장차	특장차	승용차	내연기관(신차), 내연기관(중고차), 하이브리드(신차), 하이브리드(중고차), 전기차(신차), 전기차(중고차)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화물차	
	기타자동차	하이브리드차, 기타자동차	특장차	
바이오 헬스	분류체계 부재		기타자동차	
철강	철강재	철강재, 원부자재, 기타철강재	의약품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기타철강금속제품	기타철강금속제품	의료기기	
이차 전지	건전지	건전지, 건전지부품	철강재	
	축전지	연축전지, 기타축전지	원부자재, 기타철강재, 기타철강금속제품	
섬유	섬유원료	인조섬유, 재생섬유	건전지	건전지, 건전지부품
	섬유제품	의류, 기타섬유제품	축전지	리튬이온전지, 연축전지, 기타축전지
	기타섬유제품	양탄자, 어망, 로프 등	축전지소재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직물	견직물, 모직물, 면직물 등	섬유원료	인조섬유, 재생섬유, 천연섬유
일반 기계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기타기계류		섬유패션제품	의류, 가방, 신발, 기타섬유제품
			기타섬유제품	커튼, 양탄자, 어망, 로프 등
			직물	견직물, 모직물, 면직물 등
			제조장비, 산업기계, 에너지기계, 기계부품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유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 '수입운임 특례' 8일부터 시행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과 에너지 수급 대응을 위한 전방위 조치에 나섰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기간 연장과 과징금 신설 추진, 캐나다산 원유 수입 확대, 긴급통관 지원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7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충격과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 조치와 수급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매점매석 금지 2개월 연장... 과징금·포상제 도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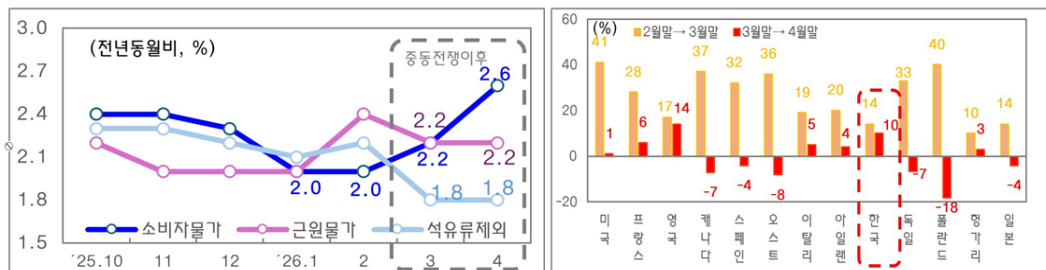
정부는 우선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 기간을 기존 5월 12일에서 7월 12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를 악용한 판매 기피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과징금 신설과 신고 포상제 확대까지 검토하면서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존에는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 제재 수단까지 강화해 시장 왜곡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제 물가안정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했으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상승폭을 약 1.2%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재경부는 일본·헝가리·폴란드·대만·프랑스 등 주요국도 정유사 보조금 지급, 가격상한제, 유류세 인하 등을 병행하며 고유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2022년 도입 이후 폐지됐던 가격상한제를 재도입했다.

● 물가상승률&주요국 3~4월 월별 경유 소매가 상승률 ●



출처: 데이터처, 석유공사

지난 2월 발표한 할당관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할당관세 유통 과정을 점검한 결과 특히 수입과일과 수산물의 가격이 할당관세 적용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요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4월 3일)한 것에 이어 집중관리품목의 신속유통 의무 부과, 위반 시 추천취소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을 5월 중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탕의 방출의 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현재 22개 품목이 지정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냉동 고등어 등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산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 추진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며,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절차상 규제를 혁신하고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중동산 대체 가능 품목을 발굴하는 한편, FTA 활용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조정품목을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 제한 품목은 통관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여러 국가에서 제조된 뒤 혼합해 거래되는 상업용 나프타는 원산지를 일괄신고할 수 있도록 4월 21일부터 '기타국(ZZ)' 코드로 수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이 추진하는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원유 수입선 다변화다. 관세청은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세율 적용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300만배럴 규모의 추가 원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는 캐나다산 원유 수입 시 FT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입증 절차가 복잡해 캐나다 생산업체들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꺼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앨버타 주정부가 발행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를 도입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184일이 걸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급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필리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이 3일, 호주는 57일인 것과 비교하면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나프타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의 수입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쟁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수입운임 특례'도 5월 8일 시행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 긴급한 필요로 선박운송 대신 항공을 이용한 경우,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된 선박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운임 특례 적용 범위에는 각종 운송비용과 보험료가 포함된다.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원자재는 소관부처와 협의해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를 통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원유·천연가스(LNG) 운송선에 대한 선박검색 지정 제외와 항 내 정박장소 이동신고 면제 등 하역절차 간소화도 시행한다. 운송선의 입항·하역 지연으로 공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원유 추가 하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원유하선 특례'도 운영해 공급 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홍콩 수출 소고기·식용란, '수출식품영문증명서' 온라인 출력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소고기와 식용란의 수출식품영문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발급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우편 수령에 소요되던 대기시간이 사라져 시간 절감 효과와 민원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 3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식약처 증명서 전산발급 시스템과 온라인상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방법에 합의했다. 기존에는 종이 문서에 '원본스탬프'와 '수출검사필증인'이 찍혀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위확인문구'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증명서 발급의 신뢰도와 편의성이 높아지고 K-축산물의 홍콩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또한 기존 우편 발송 시 2~3일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던 인력·시간·비용 부담이 사라져 민원 편의성이 향상됐다고 봤다.

증명서 발급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 좌측 상단 '발급번호'와 하단 '바코드'로 진위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 서준식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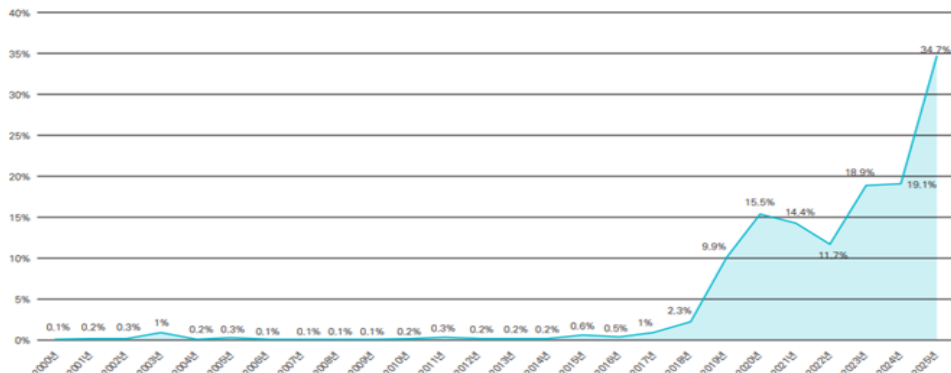
미 CBP 원산지 판정, 대미 수출 핵심 변수로 부상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최근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CBP의 사전심사(Administrative Rulings) 제도를 통해 공개된 2025년 원산지 판정 사례를 전수 조사·분석한 심층 자료다.

원산지정보원에 따르면 미국 통관 환경에서 원산지 판정의 중요성은 최근 급격히 커지고 있다. 품목분류·원산지·표시 등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 구속력 있는 판단을 제시하는 미 CBP 사전심사 결정문 가운데 원산지 관련 판단 비중은 2010년대 중반까지 1% 미만 수준에 머물렀으나, 미·중 통상갈등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고, 2025년에는 약 35%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품목분류 중심에서 벗어나,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관세율과 통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무역법 301조 관세와 각종 추가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서 비특혜원산지 판정이 기업의 실제 관세 부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연도별 미 CBP 사전심사 결정문에서 원산지가 차지하는 비중 ●



연도별 원산지 결정문 수(다른 사안과 복수 신청 건 포함) / 연도별 전체 결정문 수

보고서에는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10대 핵심 품목군별 CBP 판정 사례도 상세히 수록됐다. 분석 결과 특정 산업에서는 PCBA(인쇄회로기판 조립품), 필터 매체, 도체·코어, API(원료의약품) 등 특정 핵심 구성요소나 제조공정이 원산지 판정의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동일한 제품이라도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의 제조국이나 최종 조립 공정의 수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면서, 단순 조립이나 포장 변경만으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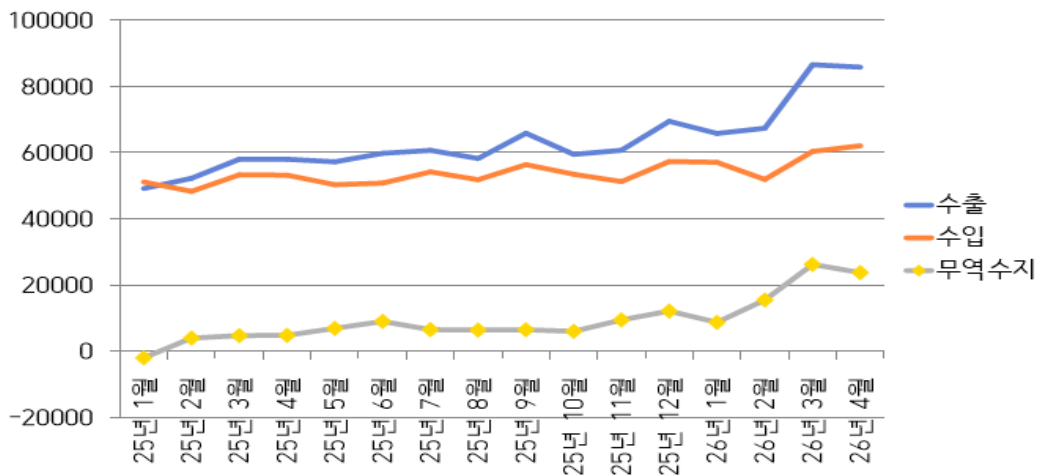
한편, 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은 ‘미 CBP 원산지 리스크’ 칼럼을 <주간 관세무역정보>에 제217호(5.4. 발행)부터 월 1회 게재 중이다.

| 김성은 기자 |

2026년 4월 수출 8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급증

대한민국 수출이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4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8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8.0% 증가한 수치로,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번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320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 시장 회복과 수요 증가가 전체 수출액의 약 37%를 책임졌다. 수입은 621억달러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으나, 수출 증가 폭이 이를 크게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23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입현황(단위: 억달러)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실적을 살펴보면 성장세는 더욱 뚜렷하다. 수출 누계는 3,0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했으며 수입 누계는 2,316억달러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하면서 전체 무역수지는 74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서준식 기자 |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 **박 재 봉**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유 병 하**
 서울세관 조사국장 **윤 청 운**
 인천세관 심사국장 **마 순 덕**
 평택세관장 **김 태 영**

관세청 데이터담당관 **강 경 훈**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송 기 웅**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 **민 희(閔 熾)**
 광양세관장 **지 성 대**

<2026년 5월 11일자>

“위법에 또 위법” 미 국제무역법원, ‘글로벌관세 10%’ 위법 판결

무역법 122조 권한 재확인한 CIT “무역적자와 국제수지 위기는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관세’가 미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해당 관세가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파이낸셜 타임스(FT), 야후 파이낸스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미국 CIT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관세에 대해 “법률상 승인되지 않은 조치(unauthorized by law)”라고 5월 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 소재 향신료 수입업체 ‘벌랩 앤 배럴(Burlap&Barrel)’과 미국 장난감 기업 ‘베이직 펀(Basic Fun!)’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 위기가 아닌 단순 무역적자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무역법 122조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대1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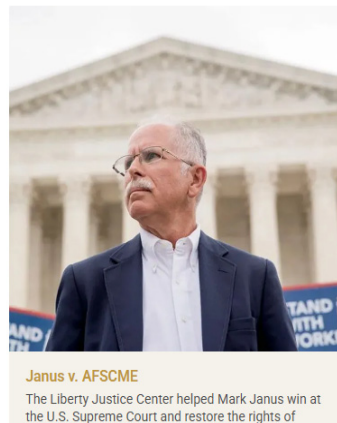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대규모·심각한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s)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미국 상황이 법 조항이 상정한 ‘국제수지 위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We're Taking on the Big Fights.

We fight for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merican families, workers, advocates, and entrepreneurs.

We challenge some of the biggest threats to liberty across the country, taking on issues ranging from free speech to federal government overreach, educational freedom, and more. When Americans' rights are threatened, we fight back with smart legal strategies to build the America we seek to preserve for ourselves, our families, and our future.

We take on these fights without ever charging our clients a dime—even if it means taking their case all the way to the Supreme Court, like we did for Mark Janus in *Janus v. AFSCME*, where we restored the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s to choose whether to join a union, and like we did for small business owners in *V.O.S. Selections, Inc. v. Trump*, where we successfully challenged unlawful IEEPA tariffs that threatened American jobs and families.



출처: 리버티 저스티스센터 홈페이지

원고 측을 대리한 비영리 법률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Liberty Justice Center)의 제프리 슈왓 수석 고문은 “미국은 무역적자를 겪고 있을 뿐 국제결제 시스템 위기에 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의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소상공인연합 ‘위 페이 더 태리프(We Pay the Tariffs)’의 댄 앤서니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법적인 관세로 큰 타격을 입어온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고 원고 측인 베이직 펀의 제이 포먼 CEO는 “관세로 장난감을 시장에 출시하는 비용이 증가했다. 이번 판결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에 중요한 승리다”라고 말했다. 8일 기준, 백악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관세 근거로 활용하려던 전략에도 차질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IEEPA 기반 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새로운 글로벌관세 10%를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의 법적 정당성과 대통령 권한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양한 통상법을 활용해 고율 관세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법원이 대통령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CIT는 이번 판결에서 글로벌관세를 전면 중단하지는 않았다. 관세 효력 정지는 소송을 제기한 두 기업에 한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애초에 글로벌관세는 임시방편 성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체계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미 행정부, 무역법 301조 공청회 진행하며 신규 관세 도입 준비

향후 무역법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추가 조사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5월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부재 및 집행 미흡을 근거로 60개국에 대한 301조 조사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와 단체들은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철강·배터리·태양광 업계는 관세를 포함한 강력한 무역조치를 촉구한 반면, 미 대두협회는 추가 관세 조치를 우려하는 등 농림·화학업계는 비관세적 접근을 주장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해당 공청회에서 한국을 증언 대상국에 포함하거나 의견서에 한국을 언급한 미 기업 및 협·단체는 총 38곳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301조 관세 조치를 찬성한 곳은 24곳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를 보였다. 특히 철강을 언급한 곳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한국정부의 보조금·정책금융 혜택, 중국산 저가 철강의 우회수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관세 조치를 찬성했다. 다만, 미국 내 대체 조달이 불가능한 한국산 특수설비와 장비에 대해서는 품목별 면제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오는 5월 14~15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번 CIT 판결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3월 말~4월 초로 거론됐지만, 중동 정세 악화로 한 달 넘게 연기된 바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나 이란과 원유 거래가 의심되는 업체를 제재하는 등 정상회담 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에 맞서 중국 역시 지난달 말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추가 규정을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번 CIT의 글로벌관세 위법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미국
통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관세 부담이 대폭 상승하며 수출입 기업은 원산지 및 품목분류와 관련된 통관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합법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세 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이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의 글로벌통관연구소장인 앤드류 박(Andrew J. Park) 미국 관세사가 미국 수입통관 등 주요 이슈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첫 환급 임박했다” 미 CBP의 IEEPA 관세 환급 상황



앤드류 박 | 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LA 총영사관 공익관세사, ICTC 글로벌통상연구소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환급과 관련한 최신 진행 상황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보고하면서, 환급 절차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CBP는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1단계를 2026년 4월 20일 공식 가동한 이후의 운영 성과를 4월 28일 기준으로 공유했으며, CAPE 시스템이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BP에 따르면 약 1,100만건의 수입신고(entry)가 CAPE 시스템에서 ‘entry-specific validation’을 통과했으며, 이 중 약 174만건은 이미 정산(liquidation)이 완료돼 환급 절차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전체 IEEPA 대상 신고 기준으로 보면 약 21%가 CAPE를 통해 환급 대상으로 접수됐고, 약 3%는 실제 환급 단계(미 재무부 지급 포함)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접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환급 집행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CBP는 첫 환급금 지급이 2026년 5월 11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초기 환급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는 시점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는 기존에 안내된 CAPE 처리 기간(약 60~90일) 대비 일부 초기 케이스에서는 더 빠른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한다.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는 CAPE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며, 오픈 당일인 4월 20일

약 18분간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일시 중단 외에는 큰 장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CIT 보고 과정에서는 실무적인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통관시스템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계정 접근 지연(비밀번호 초기화 문제), 교육 등록 과부하, CAPE 신청 시 정확한 IOR(Importer of Record) 식별 혼선, 그리고 환급 이자율 및 계산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주요 이슈로 지적됐다. CBP는 이에 대해 FAQ 업데이트 및 추가 가이드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생성이미지

또한 CAPE 1단계 적용 범위와 관련해 조정절차 신고(Reconciliation Entry) 일부 보류 상태(Suspended) 신고, 그리고 이미 최종 확정된 신고(Finally Liquidated Entry)는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Reconciliation 과정에서 IEEPA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도 보고돼 향후 정책적 정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CIT는 CBP에 2026년 5월 12일 정오(미 동부시간)에 CAPE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구했으며, 같은 날 비공개 합의 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번 보고에서는 환급 처리 속도, 누적 환급 규모, CAPE 2단계 계획, 그리고 현재 제외된 신고 유형에 대한 처리 방향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CAPE는 기술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실제 환급 확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다. 특히 CAPE 1단계 대상인 미정산 신고 및 정산 후 80일 이내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ACH(Automated Clearing House) 등록 및 ACE 계정 정상화, CAPE 제출과 이의제기(Protest) 병행 전략, 그리고 Reconciliation 등 제외 대상에 대한 별도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IEEPA 관세 환급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법적·시스템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 프로세스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향후 CAPE 2단계 및 법원 판단에 따라 환급 범위와 속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보세·화물 /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 절차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내국물품을 판매부진 사유로 반출하고자 합니다.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운영인이 반입된 내국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려는 때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해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판매물품 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해 승인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③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내국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해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 환급대상내국물품: 환급고시 제5장 제3절에 따른 정정·취하 승인서. 다만, 같은 규정에 따라 정정·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에 의한다.
2. 제1호 이외의 내국물품: 판매물품반출승인서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판매물품 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을 반출할 때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환급 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을 제30조 제1항의 장소에 보관하는 때는 다른 외국물품 등과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 바코드 스캐너의 HS Code

바코드 스캐너의 HS Code를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의

‘기타’에 해당한다면 제8471.90-0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제8471호 해설서

(A)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모양의 문자를 판독하여 이것을 부호화된 정보의 전사나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해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임펄스)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1) 자기(磁氣)식 판독기(magnetic reader): 이러한 형식의 기계에 있어서는 특수한 자기 잉크로 인쇄된 문자를 자화해 자기식 판독헤드(magnetic reader head)에 의해 전기적 임펄스(electric impulse)로 변환시켜서 계속적으로 해당 기억장치에 기억된 자료와 비교하거나 숫자 부호(보통 2진부호)의 방법에 의하여 인식한다.

(2) 광학식 판독기(optical reader): 이것은 특수잉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자는 일련의 광전지에 의하여 직접 판독되며 2진부호 방법에 따라 번역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바코드 판독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해 자동자료 처리기계나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 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위에 설명한 판독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 <후략>

수입통관 / 통관목록보류

유니패스에서 화물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통관목록보류’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등에서 조회할 수 있는 화물진행정보 외에 통관목록보류 사유 등 수입통관 심사와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에 관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특송업체, 통관지 세관을 통해 통관보류 사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통관 진행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합니다.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 내역과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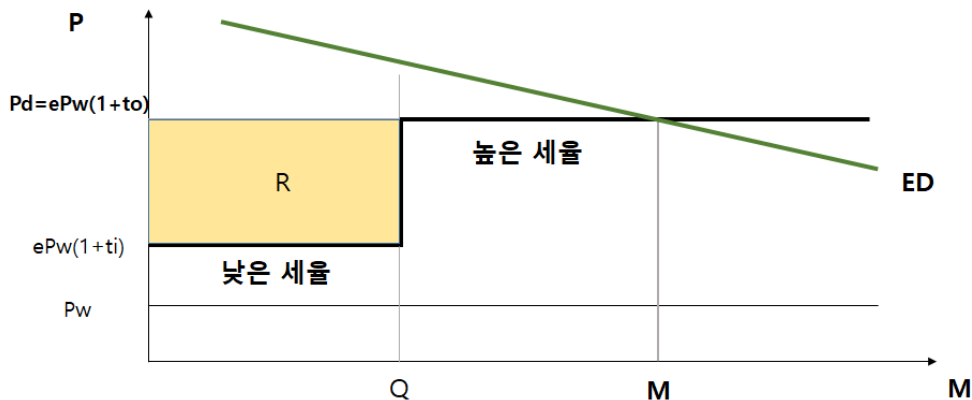
특송업체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우측 상단 화물진행정보 > M B/L - H B/L 체크’ 후 운송장번호를 입력하면 화물진행정보 및 특송업체 이름과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입항 후 조회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할당관세 관련 판례 분석

김민주 |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쟁송팀)

1. 들어가며

할당관세(Tariff-Rate Quota)란 특정 물품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탄력관세로, 일정한 수입량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량을 조절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다. 해당 제도는 시장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적용 요건과 관리 방식 역시 일반적인 관세 제도보다 엄격하게 설계돼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추천기관의 추천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 추천의 유지 여부는 곧 할당관세 적용 여부와 직결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와 관련해, 추천 요건을 위반해 추천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적용된 할당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추천요건 위반을 이유로 추천이 취소된 사안에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본 판결은 법적 수권의 정당성과 할당관세 추천 취소의 효과, 그리고 할당관세 제도의 운용원리를 종합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할당관세 관련 판례와 결정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추천의 법적 구조와 추천 취소의 법적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할당관세 관련 법령

■ 「관세법(법률 제21208호, 2025.12.23. 일부개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40호, 2026.2.27. 일부개정)」

제92조(할당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 <중략> ...

②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법 제7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의 가격동향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⑥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2. 제1항 제2호·제3호 또는 제2항 제2호·제3호의 사항
-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1조 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판례 분석

1) 수권구조의 적법성: 세부요령의 법적근거 인정 여부

실무상 할당관세제도는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의 규정만으로 직접 운영되기보다는, 농식품부의 추천요령과 그에 근거한 추천기관의 세부요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세부요령이 상위법령의 명시적 위임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해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관련 판례¹⁾에서도 원고는 ‘보세구역 반출기한 의무’라든지 ‘그 위반 시 추천 취소’와 같은 제재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세부요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판례의 태도는, 이러한 세부요령을 단순한 내부 기준으로 보지 않고 상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정한 규범으로써 기능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서울행정법원 2023.8.25. 선고 2023구합51236 판결 ●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세법」 제71조 제3항이 위임한 것은 ‘할당관세를 부과할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인데 여기서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은 문구 그 자체로 예시적 기재일 뿐만 아니라 **‘할당관세 추천 또는 추천 제외는 할당관세의 수량과 관련된 것인 점**(「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역시 같은 취지에서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천요령은 할당관세 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고는 위와 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것인 점**, 이처럼 피고는 추천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사인에 해당하는 바 할당관세 추천을 받지 못한 수입업체는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불추천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는 **당연히 그 추천 취소 권한까지 위임받은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스스로 한 추천을 취소·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고는 위임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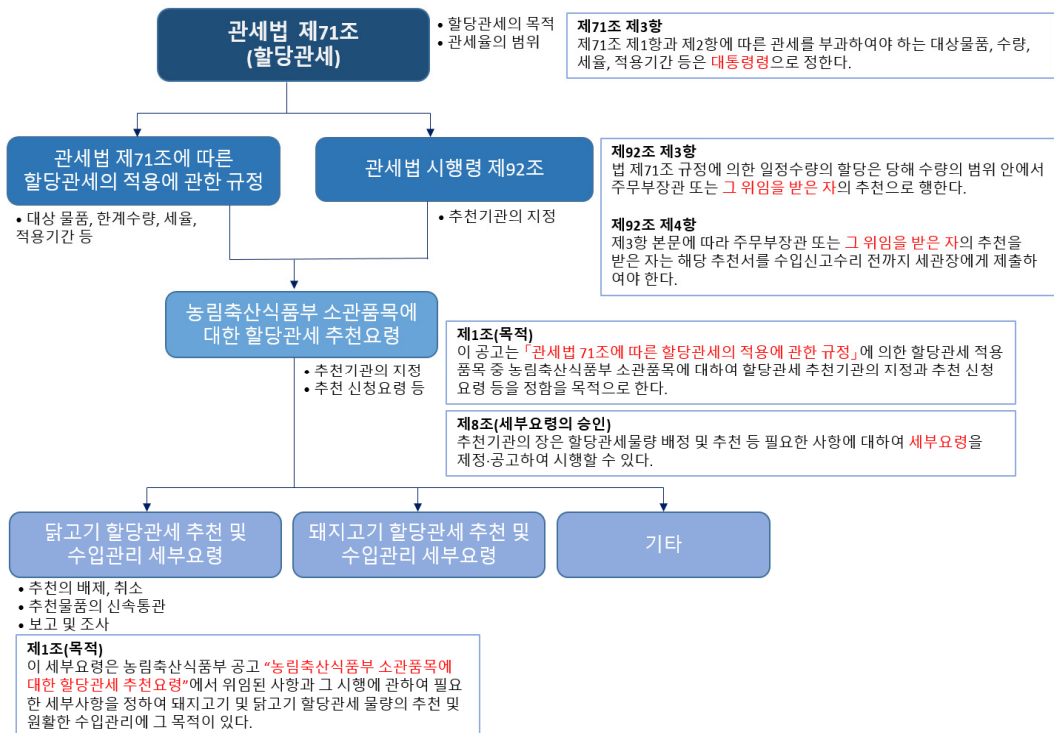
1) 서울행정법원 2023.8.25. 선고 2023구합51236 판결

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공고 제11항은 위임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 허가의 철회 또는 취소사유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이나 행정행위의 철회 또는 취소이론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모법의 위임 없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존 허가의 철회 또는 취소사유를 국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모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관세법」 제71조 및 이에 근거한 할당관세 제도는 특정 물품의 수급 조절 및 물가안정을 위해 일정한 조건에서 세율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을 위한 세부관리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적법하게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농식품부의 추천요령은 추천기관 및 추천기준을 설정하며, 세부요령은 이를 보다 구체화해 반출기한·추천배제요건 등의 보다 실제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 관련 할당관세 위임·수권 구조 ●



이러한 세부요령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할당관세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관련 공고는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세부요령에 따른 관리체계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2) 추천요건 위반과 추천 취소의 효과: 할당관세 적용 기반의 소멸

조세심판원은 추천요건 위반으로 추천이 취소된 경우, 할당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²⁾.

해당 사안에서 청구법인은 선행 수입물품을 추천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추천기관은 추천요건 위반을 이유로 기존 추천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할당관세의 적용은 단순히 추천서를 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천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유지되는 제도라고 봤다. 따라서 추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할당관세의 적용은 그 전제 자체가 결여된 것이며, 추천이 사후에 취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할당관세의 적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조세심판원 2024관0097 결정 ●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로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은 점, 추천기관인 한국육가공협회가 쟁점추천서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취소한 점, **수량 및 용도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의 정당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필수적인 바, 처분청으로는 쟁점추천서가 소급하여 취소된 이상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추천취소는 장래의 추천을 제한하는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이미 적용된 할당관세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추천이 취소되는 경우, 할당관세 적용의 전제 자체가 소멸하며, 이에 따라 세관장은 기본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할당관세 제도를 “요건 충족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외적인

2) 조세심판원 2024관0097 결정

감면제도”로 이해하고, 그 요건이 사후에 부정될 때는 감면 역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 추천요건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 할당관세 제도의 목적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할당관세 제도가 단순히 세율감면제도가 아니라, 물가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³⁾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에 물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이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의 핵심은 해당 물품이 일정 기간 내에 실제로 시장에 유통돼 소비자에게 공급됐는지에 있다. 즉 할당관세는 ‘공익적 목적’을 띠는 세율인 것이다.

● 할당관세 관련 뉴스 ●



물가 폭등에.. 소·닭고기·분유 등 '무관세' (2022.07.08/12MBC뉴스)

출처: MBC 뉴스 캡처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추천요건으로 설정된 ‘보세구역 반출기한’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물가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만약 수입된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기간 머무르거나, 형식적인 거래구조로 인해 시장 공급이 지연된다면 할당관세 제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수원지방법원 2026.1.23. 판결 2024구합76400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단순히 소유권 이전이나 거래형태에 착안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됐는지’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6400 판결 ●

할당관세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여 특정품목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세율을 달리하게 되고, 특히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의 경우 수입업자는 할당수량 범위 내에 할당관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반면에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로 관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수입물품이 적시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수입업자에게만 절세이익을 주게 된다. 그런데 **할당물량 조절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추천되는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할당관세 적용은 그 추천요건에 포섭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 <중략> …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위 반출기한 내에 보세구역에서 물리적으로 반출되어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고 단순히 이체판매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요령 10. (가)항에서 정한 ‘추천물량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해당 판결에서는 할당관세 제도가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하는 예외적 세율제도인 이상, 그 적용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며 이를 형해화하는 방식의 운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 시사점

위 판결 및 결정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관세는 ‘요건이 충족되는 상태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감면제도라는 점이다. 할당관세는 단순히 수입신고 시점에서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 요건이 계속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감면제도로 이해돼야 한다. 특히 **추천요건 위반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이미 적용된 할당관세라 하더라도 그 감면이 소급적으로 취소돼 기본관세율 적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따라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단순히 통관 시점의 요건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상태로 이해해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세부요령에 의한 관리체계는 실질적 규범으로 작동하므로, 세부요령에 따른 의무까지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일련의 판결 및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할당관세 제도는 ‘법률→시행령→추천요령→세부요령’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운영되며, 이 중 세부요령 역시 단순한 내부 지침을 넘어 실질적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요령에서 정한 반출기한, 추천배제 요건 등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실제로 할당관세의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결국 수입업자는 세부요령을 ‘참고사항’ 수준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할당관세는 공익적 목적의 세율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준수보다 실질적인 행동이 더 중시된다.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할당관세 제도의 목적이 물가안정에 있는 이상, 그 해석 역시 형식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머무를 수 없고, **실제로 물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됐는지 여부라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할당관세 제도가 일반적인 조세감면과 달리 강한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는 제도라는 점을 설시한 것이며, 앞으로도 공익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5. 맺음말

할당관세 제도는 외형적으로는 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감면 제도로 보이지만, 본 사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한 세율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가 쟁점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할당관세는 서민물가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구조 아래서는 수입업체에 할당관세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할당관세 제도를 단순한 세율 혜택 제도로 인식하지 말고, 공익적인 목적과 엄격한 요건 준수를 전제로 작동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할당관세 추천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은 제도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그 준수 여부가 곧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국 할당관세는 ‘적용받는 것’보다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항상 유의해서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6단위 코드 대폭 확대” HS 2028 주요 개정 내용과 신설 품목 분석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세계관세기구(WCO)의 제8차 HS 개정판(HS 2028)이 2025년 6월 WCO 총회에서 승인됐으며, 2026년 1월 최종 확정돼 2028년 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WCO의 공식 개정권고안을 수록한 문서(NG0304, 2025.6.26.,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안에 따른 HS 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 개정’)를 바탕으로 2028년부터 시행되는 제8차 HS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HS 제7차 Review-Cycle과 팬데믹

HS 협약 제16조는 협약의 개정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HS 협약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권고(recommend)되며, 이 권고안이 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원국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절차를 거쳐 수락된 개정안의 발효 시기에 대해 협약 제16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HS 협약 제16조

4. 수락된 개정안은 다음 중 하나의 날짜에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a) 권고된 개정안이 4월 1일 전에 통지된 경우, 해당 통지일로부터 2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
 - (b) 권고된 개정안이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통지된 경우, 해당 통지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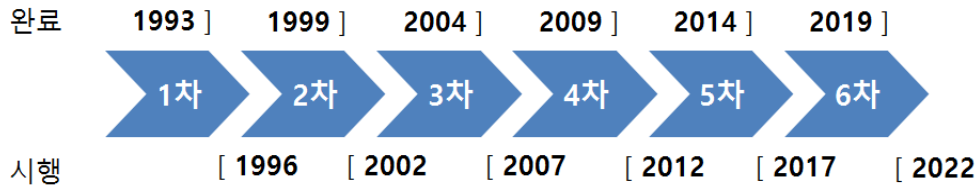
이사회 개최는 보통 매년 6월 말에 이뤄지므로 개정안은 대체로 이사회에서 통지한 후의 3차년도 1월 1일에 발효된다. 개정안이 발표되기까지 통상 2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뜻이다. 이 조항은 HS 개정안이 공포된 후 각 회원국이 국내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HS 개정안이 실제 발효일보다 약 2년 6개월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HS위원회와 HS검토소위원회는 실제 발효일보다 약 3년 앞서서 HS 개정안을 확정 및 채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각의 개정안이 HS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수정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각 개정안은 실제 발효 시기보다 최소 5~6년, 길게는 7~8년 앞서 준비돼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를 WCO에서는 ‘개정주기(Review-Cycle)’라고 표현하고 있다.

품목분류표의 개정주기에 관해 협약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1988년 시행 이후 1992년과 1996년에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고, 이후 2002년부터는 5년의 개정주기가 정착돼 오고 있다(2002

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까지 총 7차례 개정). 2022년 HS까지의 개정주기 진행 경과
는 다음 그림과 같다.

● HS 발표 이후 현재까지 Review-Cycle 개관 ●



따라서 지금까지의 관행대로라면 차기 HS 개정안은 2027년에 발효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9년 6월, 제7차 HS 개정안(2022년 HS)이 통지된 이후 제8차 HS 개정안(당초 관행대로라면 2027년 HS) 준비를 시작해야 할 즈음인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선언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 공식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했고, 2023년 5월 5일에 이르러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발표했다.

이 기간 중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재택근무나 디지털 오피스, 비대면 온라인 회의 등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아 왔다. 대면 회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HS위원회와 HS검토소위원회는 취소되거나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다. 온라인 회의의 경우 전 세계 모든 회원국이 동시에 접속 가능한 시간으로 한정해야 하는 문제와 대면 회의보다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진행 속도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처리기간이 대폭 길어지게 됐고 결국 WCO는 개정안의 준비 부족 문제로 제8차 개정안 발효 시기를 2028년으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후의 제9차 개정판은 5년의 개정주기 관행에 맞춰 2033년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HS 제8차 개정판(이하 ‘2028년 HS’라 한다)은 개정주기로는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2028년 HS는 2025년 6월,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고 각 회원국은 남은 기간 동안의 준비를 거쳐 자국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국내 수용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2028년 HS 시행에 맞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안,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 고시) 개정안 및 HS 해설서(관세청 고시)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

2. HS 품목분류표 개정 경과

1988년 HS 협약 출범 이후 현재까지 품목분류표 개정 경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 HS 품목분류표 개정 경과 ●

구분	개정 개요	주요 개정품목	6단위 코드의 수
1차 개정 (1992.1.1.)	HS 제정 작업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 반영 및 호의 용어를 보완·개정	- 소호의 통합 및 신설 - 호의 용어 등	5,019→5,018
2차 개정 (1996.1.1.)	신상품의 개발과 국제기구에서 요청한 마약원료물질 및 오존층 파괴물질 등을 특정 호(또는 소호)에 신설	- 영상전화기, 팩시밀리, 휴대용 컴퓨터 등 - 마약원료물질 및 오존층파괴물질 등	5,018→5,113
3차 개정 (2002.1.1.)	폐기물 및 CITES 협약 대상품목을 특정 호(또는 소호)에 신설했으며 HS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용어 정의 등을 마련	- 보증된 참조물질 및 산업 폐기물 등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 소매포장 정의 등	5,113→5,224
4차 개정 (2007.1.1.)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통제물질 및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호(또는 소호)를 신설했으며 다양한 신상품 개발로 인해 종전의 용어 정의 및 분류 기준을 보완	- 수은화합물, 농약원료, 청석면 등 유해물질 - 반도체 제조용 기기 - 유·무선 통신기기 등 - 신문용지, 합성섬유 및 재생섬유 등에 대한 용어	5,224→5,052
5차 개정 (2012.1.1.)	FAO(국제식량농업기구)의 요청에 따른 농수산물의 분류체계를 재편하는 한편, 신상품 및 국제무역상 중요한 품목을 반영	- 품목분류표상 제3류의 어류의 구분을 위한 학명 적용 - 제1~4부의 분류체계 개정 - 유기화합물의 분류체계 개정 - 바이오 디젤(제3826호)에 관한 규정 신설	5,052→5,205
6차 개정 (2017.1.1.)	WSC(세계반도체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집적회로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류의 학명을 다양하게 특개하는 한편, 신상품 및 국제무역상 중요 품목 반영	- 제3류에서 어류의 증명(학명) 확대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련 소호 신설 (스톡홀름 컨벤션 요청) - 말라리아 퇴치용 제품 관련 개정 - 복합부품(MCO) IC 개념 신설 및 제8542호 범위 확대 -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제87류 각 호의 소호체계	5,205→5,387
7차 개정 (2022.1.1.)	전자담배, 스마트폰, 3D프린터, 무인기 등 신상품을 위한 새로운 호·소호를 신설하고 바젤협약의 요청에 따라 산업폐기물(e-waste) 특개	- 식용곤충을 제0410호에 포함 - 제2404호(전자담배 등) 신설 - 스마트폰(제8517.13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 3D프린터(제8485호) 등의 호·소호 신설 - 제8549호(e-Waste) 신설 - 제8806호(무인기) 신설	5,387→5,612

역대 개정 과정에서 6단위 코드 숫자의 증감폭이 가장 컸던 것은 2022년의 제7차 개정이지만, 코드 수 증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파급력이 컸던 개정은 반도체, 통신기기 등 IT 분야의 개정폭이 가장 컸던 2007년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2022년 HS 개정 때도 스마트폰, 평판디스플레이모듈, 3D프린터 등 IT와 관련한 변화가 큰 편이었다.

3. 2028년 HS의 개정 개요

2028년 HS는 총 1,229개의 호(Heading)와 5,841개의 소호(Subheading)¹⁾로 구성된다. 주요 개정 주제별 개정 품목은 다음 표와 같다.

● 제8차 HS 개정(2028.1.1. 시행)의 주요 내용 ●

개정 개요	주요 개정품목	코드의 수	
		4단위 (heading)	6단위 (subheading)
제3류 분류체계 개정	- 제0306호, 제0309호를 삭제하고 제0310호와 제0311호를 신설 - 갑각류(제0310호)의 6단위 소호 분류체계를 제3류 다른 호와 일치하도록 개정 - 다양한 종의 갑각류 학명을 소호 레벨에서 신설	1,228→1,229	5,612→5,841
농산물 분야의 개정	- 어린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0710호 및 제2005호의 개정 - 구아바, 블루베리, 리치, 용과 등 다양한 과실종의 학명을 소호 레벨에서 특개 - 덜 익은 대두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1201호의 용어 개정		
식이보조제를 위한 4단위 호 신설 (제2107호)	- 제2107호 및 관련 주를 신설해 식이보조제의 정의, 제시 형태 등 규정 - 제21류 조제식료품, 제29류 및 제30류 등의 의약품과의 구분기준 제시		
산업용 대마(hemp)의 활용도 증가를 반영한 품목분류표 개정	- 의료, 식용, 직물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 대마가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한 제12류, 제11부 등 개정		

1) WCO 홈페이지에는 2028년 HS의 6단위 소호의 수가 5,852개인 것으로 돼 있다[HS 2028, the eighth edi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HS) nomenclature, will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28. The amendments represent the culmination of the 7th HS Review Cycle, reflecting six years of in-depth technical discussions and studies undertaken within the WCO. The 2028 edition of the HS Nomenclature comprises 1,229 headings and 5,852 six-digit subheadings. 출처: www.wcoomd.org/en/topics/nomenclature/instrument-and-tools.aspx]. 그러나 글쓰기가 세어 본 결과 5,841개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 개요	주요 개정품목	코드의 수	
		4단위 (heading)	6단위 (subheading)
마약류 전구체 및 마약제조장비와 관련한 개정	- 펜타닐 및 펜타닐 유사체용 전구체를 소호 레벨에서 특개 - 마약 제조용의 실험실용 유리기구, 수공구 및 기계 등의 특개		
코로나19가 초래한 HS 개정	- 백신의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제3007호 신설 - 공중보건 및 긴급 의료용품과 관련한 개정		
플라스틱 제품의 국제간 이동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정	- 제39류 내에서 플라스틱 원재료별 소호의 세분류, 1회용(single-use) 물품에 대한 소호 특개 - 플라스틱 웨이스트의 분류체계 개편		
유리	- 오버플로우 융합 인상방식의 평판유리를 위한 호의 용어 개정(제7004호) - 램프가공한 유리의 개정 명확화 - 유리섬유의 웨이스트와 관련한 소호체계 개정		
제16부의 개정	- 태양광 워터펌프, 휴대용 태양전지 램프 등을 위한 소호 신설 - 냉매 종류에 따른 냉장용 기기의 구분 - 역(reverse) 자동판매기를 제8476호에 포함 -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정의 개정 - 로봇청소기를 위한 소호 신설(제8508호)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한 개정	- 공기주입식 비행보트의 분류 명확화를 위한 제17부 주 개정 - e-Power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류를 위한 제8703호 소호체계 개정 - 전기스쿠터 등을 위한 소호 신설 - 무인기(drone)의 원격조종 개념 정의를 위한 주 개정		
국제거래량이 미미한 물품의 품목코드 조정	- 아가리쿠스 속 버섯, 피마자, 치커리 뿌리 등의 소호 삭제 - 사진용 필름 및 영화용 필름의 소호체계 간소화 - 모자 및 모체와 관련한 제65류 호체계 간소화 - 음극선관 부분품의 소호 삭제		
그 밖의 개정	- 화학무기 원료의 전구체와 관련한 개정 -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고무 폐기물 등과 관련한 소호체계 개정		

2028년 HS는 2022년 버전과 비교해 호(heading)의 수가 1개 늘어난 한편, 소호(sub-heading)의 수는 무려 229개 늘어났다. 이는 HS 개정 역사에서 가장 큰 폭의 6단위 코드 확대다. 코드 수의 증가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개정 대상도 HS 전 섹션(Section)에 고르게 걸쳐 있을 만큼 다양하고 변화가 많다.

2028년 HS에서 각 류별로 호와 소호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8년 HS 개정의 류별 호·소호 증감 내역 ●

류 (Ch.)	호의 수(증감)		소호의 수(증감)		주요 내용
	HS 2022	HS 2028	HS 2022	HS 2028	
제3류	9	9	225	260(+35)	- 제0306호(갑각류)호를 삭제해 신설된 제0310호로 이동하는 한편, 갑각류 내 소호체계의 맥락을 제3류의 다른 호와 일치하도록 개정 - 제0309호(어류의 가루 등)를 삭제해 신설된 제0311호로 이동
제7류	14	14	73	72(-1)	- 결구상추와 아가리쿠스 속 버섯의 소호 삭제 - 어린 옥수수 속대 소호 신설
제8류	14	14	71	84(+13)	- 제0802호(견과류), 제0810호(그 밖의 과실), 제0811호(냉동과실), 제0813호(건조과실) 등에서 각종 과실의 학명을 소호 단위에서 신설
제12류	14	14	50	49(-1)	- 피마자, 치커리 뿌리 소호 삭제 - 대마 종사 소호 신설
제13류	2	2	11	12(+1)	- 소나무 올레오레진 소호 신설(제1301.30호)
제15류	21	21	53	55(+2)	- 대마씨유와 그 분획물의 소호 신설(제1515.4호)
제20류	9	9	52	53(+1)	- 어린 옥수수 속대 신설
제21류	6	7(+1)	16	19(+3)	- 프리믹스와 조제품 소호 신설 - 제2107호를 신설해 식이보조제를 특개
제22류	9	9	24	30(+6)	- 밀크 대용물(식물성 원료 기반의 음료)을 위한 소호 신설(제2202호)
제23류	9	9	24	26(+2)	- 대마종자유로부터 나온 유박 소호 신설 - 향균제를 함유한 사료 소호 신설
제27류	16	16	43	44(+1)	- 제2710호의 웨이스트 오일의 소호 세분화
제28류	50	50	180	184(+4)	- 요드화물과 요드산염의 소호 세분화
제29류	42	42	410	423(+13)	- 화합물의 무역거래 동향 반영, 몬트리올의정서·화학무기금지협약 등과 관련한 유기화합물의 특개를 위한 소호 신설 - 마약류 제조용 전구물질의 소호 특개
제30류	6	8(+1)	45	84(+39)	- 제3007호를 신설해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세분해 특개 - 제3008호를 신설해 동물용 의약품 특개
제37류	7	7	30	22(-8)	- 제3702호의 사진용 필름과 제3706호의 영화용 필름의 소호체계 간소화

류 (Ch.)	호의 수(증감)		소호의 수(증감)		주요 내용
	HS 2022	HS 2028	HS 2022	HS 2028	
제39류	26	26	131	165(+34)	- 폴리에스테르 수지 소호 세분화 - 천연중합체 소호 세분화 - 플라스틱 웨이스트와 스크랩 소호 세분화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관련 소호 신설 - 공중보건을 위한 제품 관련 소호 신설
제40류	17	17	80	83(+3)	- 재생고무 제품 소호 세분화 - 고무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소호 세분화
제44류	21	21	128	153(+25)	- FAO의 요청에 따라 제44류 각 호에 특정 목제품 분류를 위한 소호 신설 - 제4407호 제재목, 제4412호 합판 등의 소호 세분화
제48류	22	22	101	102(+1)	- 얼굴보호용 마스크 소호 신설
제53류	10	10	23	25(+2)	- 대마의 토우, 대마사 소호 신설 - 코이어 사의 소호 삭제
제56류	9	9	30	38(+8)	- 제5601호에 면봉 소호 신설 - 대마 섬유류의 로프 소호 신설 - 그물 종류를 재질에 따라 세분화
제63류	10	10	52	54(+2)	- 얼굴 보호용 마스크 소호 신설
제65류	6	4(-2)	8	8	- 제6501호, 제6502호, 제6507호를 삭제해 신설된 제6508호로 통합 - 플라스틱제의 1회용 모자 소호 신설
제68류	15	15	50	51(+1)	- 대마를 응결해 제조한 보드(board) 소호 신설
제70류	19	19	71	80(+9)	- 음극선관용 외피 소호 삭제 - 마약류 제조에 사용 가능한 실험실용 유리제품의 세분화 - 유리섬유의 웨이스트 소호 신설
제71류	18	18	55	59(+4)	- 가공하지 않은 금의 종류 세분화 - 귀금속 주화의 세분화
제73류	26	26	124	123(-1)	- 제7318호의 소호 분류체계 개편
제78류	4	4	8	7(-1)	- 납의 판, 시트(sheet) 소호체계 간소화
제82류	15	15	64	66(+2)	- 알약(마약류) 제조용 공구 및 다이를 위한 소호 신설
제84류	86	86	538	549(+11)	- 수소불화탄소(HFC)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장냉동 기구를 위한 소호 신설 -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의 소호 신설 (제8419호, 제8479호) - 역 자동판매기 소호 신설

류 (Ch.)	호의 수(증감)		소호의 수(증감)		주요 내용
	HS 2022	HS 2028	HS 2022	HS 2028	
제85류	48	48	296	298(+2)	- 로봇 청소기, 전동칫솔, 휴대용 태양광 램프 등을 위한 소호 신설 - 음극선관의 부분품 소호 삭제(제8540호)
제87류	16	16	98	103(+5)	- 앰볼런스 소호 신설, e-Power 하이브리드 차량 소호 신설(제8703호) - 이동진료차 소호 신설(제8705호) -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 소호 신설
제90류	32	32	143	150(+7)	- 긴급 의료용 장비와 관련한 소호 신설(제9018호) - 오존치료기 등 소호 신설 - 적하계수기 소호 신설
제93류	7	7	18	21(+3)	- 제9304호(기타의 무기) 소호 분류체계 세분화
제95류	6	6	39	41(+2)	- 제9503호에 풍선 소호 신설 - 제9505호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소호 삭제 - 제9507호에서 낚시용 망 소호 신설

4. 2028년 HS의 주요 개정 내용

가. 제3류의 개정

1) 분류학적 명칭(Taxonomic Name)을 반영한 소호 용어 조정 등

2012년 HS에서 제3류의 분류체계가 대폭 개정될 당시 제3류 내 각 호와 소호의 용어를 정의하는 데 있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해양수산정보시스템(ASFIS, Aquatic Sciences and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목록이 기준이 됐다. ASFIS 목록은 전 세계에서 포획되거나 양식되는 수산물의 생산량 데이터를 수집할 때, 국가 간 통계 관리의 오류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 참조 시스템이다. ASFIS 목록에는 1만 3,700여종(2025년 현재)의 수산물에 대해 자체 분류코드, 학명(Scientific name), 영어 명칭, 분류학적 과명(Family name), 최초 명명자(과학자) 이름 등이 제공돼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평삼치로 불리는 어종은 영어로는 'Korean seerfish'로 불리며 학명은 '스콥베로모루스 코레아누스(*Scomberomorus koreanus*)'로 명명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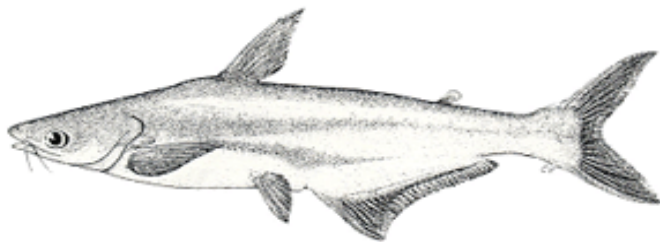
현재 제3류 각 호 및 소호는 대체로 ASFIS 목록을 준용해 해당 어종의 영어 명칭과 학명을 병기하고 있다. 학명 표기는 전 세계 표기원칙에 따라 속(Genus)명과 종(Species)명의 두 단어로 구성해 이탤릭체로 표기하되 속(Genus)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미국은 명태(Alaska pollock)의 학명을 현재의 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에서 ASFIS 목록상의 명칭인 가두스 찰코그라무스(*Gadus chalcogrammus*)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EU는 흔히 메콩강 메기로도 알려진 동남아시아 민물메기(Striped catfish, 학명 판가시아노돈 히포프탈무스(*Pangasianodon hypophthalmus*))가 분류학적 기준으로는 현재 HS 제3류에서 메기(catfish)를 구분하는 판가시우스(*Pangasius*)속의 어종과는 다름을 지적하고 품목분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한 관련 소호의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EU는 가오리·홍어의 지느러미(Ray and skate fin)를 특제하는 한편, 학명을 적절히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 Striped catfish[판가시아노돈 히포프탈무스(*Pangasianodon hypophthalmus*)] ●



HS검토소위원회는 일부 수정을 거쳐 이들 제안을 수용했고 그에 따라 제0302호부터 제0305호의 일부 소호가 신설 또는 개정됐다.

2) 가공도에 따른 소호의 배열 및 갑각류·연체동물의 분류체계 개정

제3류에서 어류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살아있는 것(제0301호), 신선 또는 냉장한 것(제0302호), 냉동한 것(제0303호)과 절단 또는 추가가공한 것(제0304호 또는 제0305호)의 순서대로 호가 배열돼 있다. 제0307호(연체동물)와 제0308호(수생무척추동물) 내에서 소호 분류 시에도 이러한 순서는 지켜지고 있다. 동일한 원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도 가공단계가 낮은 것이 순서상 앞에 배열되도록 하는 것은 HS 품목분류표 전체에서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는 원칙 중 하나다.

그러나 제0306호(갑각류)에서는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냉동한 것(소호 제0306.1호)이 살아있는 것(소호 제0306.3호)보다 순서상 앞 소호에 위치하고 있다. 2021년 11월, 제59차 HS검토소위원회에서 노르웨이는 이에 대해 제0306호의 소호 분류순서를 HS 품목분류표의 일반적 원칙에 맞도록 재배열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르웨이는 제0307호와 제0308호에서도 살아 있는 것과 신선·냉장한 것을 각기 다른 소호에 구분해 분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함께 제시했다. 노르웨이의 제안은 단순한 기존 소호의 재배열에 그치지 않고 이들 호 내에 킹크랩과 대게 등 특정 갑각류 종들에 대한 여러 소호들을 신설하는 것까지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아르헨티나는 냉수성 새우의 일종인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를 제0306호의 소호 단위에서 특개할 것을 제안했으며, 그 외에도 HS검토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가재류(crayfish 또는 crawfish)를 소호 레벨에서 특개하는 내용까지 검토됐다.

●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플레오티쿠스 몰레리(*Pleoticus muelleri*)] ●



HS검토소위원회는 제0306호부터 제0308호에 다양한 종을 특개하기 위한 새로운 소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제0306호의 경우 기존 소호 분류체계에서 이미 사용 중이던 코드를 피해 새로운 코드를 신설하기에는 사용 가능한 코드의 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돼, 제0306호를 삭제하고 제0310호를 신설해 갑각류의 세분류 체계를 제0310호 내에서 재편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살아있거나 신선·냉장·냉동한 갑각류는 제0310호에 분류되는 반면, 이를 가공한 갑각류의 가루와 펠릿은 그보다 앞선 호인 제0309호에 포함돼, 품목분류표상 일반적인 호 배열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차제에 제0309호를 삭제하고 제0311호를 신설하도록 추가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8년 HS에서 제3류의 전반적인 분류체계는 아래 표와 같이 바뀌게 됐다.

● 2028년 HS 개정에 따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분류 ●

2022년 HS			2028년 HS		
제0301호	어류 (Fish)	① 살아있는 것(관상용, 이식용, 식용)	제0301호	어류 (Fish)	① 살아있는 것(관상용, 이식용, 식용)
제0302호		② 신선, 냉장한 것	제0302호		② 신선, 냉장한 것
제0303호		③ 냉동한 것	제0303호		③ 냉동한 것
제0304호		④ 필레(Fillet)	제0304호		④ 필레(Fillet)
제0305호		⑤ 건조, 염(수)장, 훈제	제0305호		⑤ 건조, 염(수)장, 훈제
제0306호	갑각류(①~⑤)				
제0307호	연체동물(①~⑤)		제0307호	연체동물(①~⑤)	
제0308호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①~⑤)		제0308호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①~⑤)	
제0309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분말, 거친 가루, 펠릿(식용) ²⁾				

2022년 HS		2028년 HS	
		제0310호	갑각류(①~⑤)
		제0311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분말, 거친 가루, 펠릿(식용)

이 개정에 따라 제3류 내에서 갑각류의 가공정도에 따른 소호배열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류 내에서 개정된 호의 순서를 보면, 어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갑각류의 순서로 배열되게 되는데, 이는 제3류 표제의 순서(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의 순서)와 달라지는 문제점이 새로 생기게 됐다. 2033년 HS 또는 그 이후의 HS 개정주기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회원국이 나올 수도 있다.

나. 농산물 분야의 개정

① **덜 익은 대두(팿콩):** HS 제12류에는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이 분류되며, 대표적인 채유용 종자인 대두(Soya bean)는 제1201호에 분류된다. 대두의 채유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익어 건조된 상태의 대두를 사용해 진행되며, 팿콩 상태에서 채유는 효율성과 품질 문제로 인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2028년 HS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제1201호에서는 채유용이 아닌 덜 익은 대두를 제외하고 이를 제0708호와 제0710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호와 소호를 개정했다.

② **제0902호의 소호 용어 개정:** 제0902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하며 차나무의 꽃·봉오리와 잔유물이 포함된다. 그러나 시장에서 널리 차(茶)로 불리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해당되지 않는 식물에서 제조한 것(다양한 침출차 종류)은 제외한다.

제0902호의 소호는 크게 녹차(비발효차, 소호 제0902.10호와 제0902.20호)와 홍차 및 부분 발효차(소호 제0902.30호와 제0902.40호)로 나뉜다. 제0902호 소호체계를 보면 사실상 비발효차를 녹차와 동일한 범위로 보고 있으며, 발효차를 홍차(black tea)와 동일한 범위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28년 HS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발효차를 소호의 용어에서 명시하도록 제0902호의 각 소호 용어를 개정했다. 그러나 용어 개정을 통한 소호 범위의 변경은 없다.

2)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제2301호에 분류한다.

③ 그 밖의 개정: 제2부에는 그 밖에도 회원국 등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의 식물을 특제하기 위해 제2부 내에 여러 소호를 신설 또는 세분했다. 예를 들면 FAO의 요청에 따라 제0804호와 제0810호에는 다양한 열대과일을 소호 단위에서 특제하는 한편, 소호 제1301.30호를 신설해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 것]로부터 얻어진 올레오레진을 특제했다. 또한 미국의 요청으로 제0810호, 제0811호와 제0813호의 소호 단위에서 블루베리[바키니움 아속 시아노코쿠스(Vaccinium sect. Cyanococcus)]를 특제했다.

다. 식이보조제를 위한 제2107호의 신설

2028년 HS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을 꼽으라면 바로 제2107호의 신설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식이보조제는 HS 제4부와 제30류의 여러 호에 걸쳐 다양한 범주의 물품과 관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거래되는 물품군을 위한 새로운 호를 신설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004호의 의약품을 제외하고, 통상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양제라 불리는 물품은 그 성분이나 성상에 따라 제15류, 제1704호, 제18류, 제20류, 제2102호 또는 제22류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되거나 이들 호에 명백히 포함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제2106호에 분류된다.

제2106호 해설서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 식이보조제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 제2106호 해설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색소·향미제·방향성(芳香性) 물질·캐리어(carrier)·충전제·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2028년 HS에서는 제2107호를 신설해 식이보조제(dietary supplement)를 분류하도록 했다. HS 품목분류표에서 제2107호 신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제4부 주 제2호 신설, 제18류 주 제1호 나목, 제21류 주 제4호 및 제5호 신설과 제30류 주 제1호 가목 등이다.

제4부 주 제2호는 제2107호에 분류되는 식이보조제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우선함을 규정한다. 그리고 제21류 주 제4호는 제2107호에 분류되는 식이보조제의 정의를 제공한다. 호의 용어에 따르면 제2107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최소한 ‘일정한 투여량’으로 된 것과 ‘소매용 포장’으로 된 것, 둘 중의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정한 투여량’으로 났다는 것은 1회

복용을 위해 의도된 캡슐, 알약, 정제, 앰플 및 봉지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그 이외의 것, 예를 들어 벌크용기에 담긴 가루,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조제품이라면 소매용 포장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한다면 신설되는 제2107호의 범위에 대한 두 가지 쟁점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제4부 주 제2호의 우선 분류규정에 따라 그 구성성분이나 제조공정상으로는 (2022년 HS 기준으로는) 제1부 내지 제4부의 다른 호에 분류될 수도 있는 물품이 제21류 주 제4호에서 정의한 식이보조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8년 HS에서는 제2107호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HS위원회와 HS검토소위원회에서 각 회원국은 이 문제를 인식했으나 새로운 호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는 못했다.

둘째는 2022년 HS에서 제2106호에 분류 가능한 모든 식이보조제가 신설 예정인 제2107호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식이보조제 또는 강화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나 물질을 사전에 조합한 프리믹스나 혼합물의 경우 그 구성성분 측면에서는 식이보조제와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량 생산용 원료는 소매용 포장 형태가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제2107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2028년 HS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제2107호의 범위 해석에 따른 여러 가지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 대한 국내외 품목분류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산업용 대마의 활용도 증가 반영

대마는 다용도 다목적의 작물로 수천 년간 재배돼 왔다. 마리화나(Marijuana)와 헴프(Hemp)는 생물학적으로는 동일한 대마초(*Cannabis sativa L.*) 식물군에 속하지만, 환각 성분(THC, tetrahydrocannabinol)의 함량과 용도에 따라 법적·산업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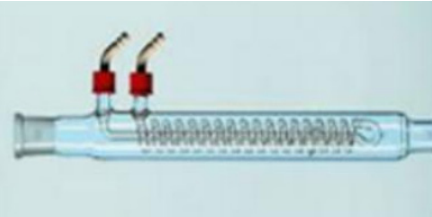
상업적 대마의 글로벌 시장은 2022년 약 47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됐으며, 2030년에 이르면 약 1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8년 HS는 대마씨(제1207.80호), 대마씨유(제1515.4호), 대마 섬유(제5302호) 등 HS 제2부부터 제13부까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마. 마약류 전구체 및 마약 제조장비의 관리

국제 마약 제조범들이 완제품(마약류)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피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거나 산업용으로도 널리 쓰이는 ‘원료 물질(전구체, Precursors)’을 밀거래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마약 단속의 핵심 난제 중 하나다. HS 품목분류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메탐페타민이나 펜타닐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의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물질을 꾸준히 HS 품목분류표에 특게해 왔다.

2028년 HS에는 불법 마약제조용 원료물질, 특히 펜타닐 제조용 전구체와 전전구체의 관리 강화를 위해 이전의 HS 개정안을 능가하는 큰 폭의 개정을 수용했고 그 밖에도 이러한 전구체와 전전구체를 가공해 최종적으로 마약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처리, 화학반응, 알약 제조용 설비 등을 관련 소호 단위에서 특게했다. 이러한 실험실용 기구와 장비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구분	용도 및 기능	관련 호
반응플라스크 	주로 유리로 만든 플라스크로 전구체와 촉매, 용매를 넣고 열이나 압력을 가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 마약 제조 시 4-APNA P-2-P 같은 전구체를 펜타닐이나 메탐페타민으로 전환하는 합성(Synthesis) 공정 그 자체가 일어나는 핵심 장치임.	제7017호
분별깔때기 	위는 넓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추형(Cone) 또는 배 모양(Pear-shaped)의 유리 용기. 마약 원료(전구체)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특정 용매를 이용해 마약 성분만을 뽑아내는 액체-액체 추출(Extraction) 과정에 사용	제7017호

구분	용도 및 기능	관련 호
환류냉각기 	액상의 원료를 장시간 가열하는 공정에서 용매의 증발을 막아 반응 조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혼합물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한 증류 과정에서 증기를 응축해 다시 액체로 만드는 데 사용	제7017호
가열벨트와 드럼 	마약제조 시 화학반응 공정에서 정밀하고 균일한 가열을 제공하는 데 사용	제8419호
정제(tablet) 성형기와 다이(die) 	불법 마약 제조 공정에서 최종적으로 합성된 마약 가루를 최종 소비자가 복용하기 쉬운 알약(Tablet)이나 캡슐(Capsule) 형태로 만드는 제형화(Formulation) 장비	제8207호 제8479호 등

바. 제16부의 개정

① 태양광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기: 태양광 패널이 내장됐거나 연결·결합 가능한 태양광 패널을 동력소스로 사용하는 워터펌프를 특제하기 위해 소호 제8413.71호를 신설하는 한편, 조명기구, 충전 가능한 배터리 및 태양전지 패널로 구성된 휴대용의 태양광 램프를 위해 소호 제8513.11호를 신설했다.

② 냉매 사용에 따른 열펌프의 구분(제8415호, 제8418호):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와 제8418호의 냉동기구를 HFC(Hydro Fluorocarbon), 수소불화탄소를 냉매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6단위에서 세분류함에 따라 관련 소호가 신설됐다.

③ 역 자동판매기(Reverse vending machine): 일반적인 자판기와는 반대로 재활용 가능한 빈 병이나 캔을 기계에 넣으면 보상(주로 현금이나 할인 쿠폰)을 받는 시스템을 가진 기계로 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사용되는 역 자동판매기를 제8476호에 포함시키기 위해 소호 제8476.30호를 신설했다.

④ 로봇청소기와 전동칫솔: 국제거래 규모의 확대 동향을 반영해 로봇청소기(소호 제8508.12호)와 전동칫솔(소호 제8509.50호)을 6단위 소호 레벨에서 특제했다.

사. 미래 모빌리티

① **e-Power 하이브리드 자동차**: 추진용 전동기와 내연기관으로 이뤄져 있으나 내연기관이 바퀴를 직접 구동하지 않고 발전만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 전기 에너지로 고출력 전기 모터가 바퀴를 굴리는 방식의 자동차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호 제8703.81호를 신설했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확대**: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국제거래량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소호 제8711.60호를 세분해 추진용의 전동기를 갖춘 페달구동식 자전거(소호 제8711.61호)와 킥 스쿠터(소호 제8711.62호)를 특제했다.

아. 국제거래량 감소에 따른 조정

제7차 HS 개정주기에는 HS 발효 이후 현재까지 그 거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의 기술동향이나 무역패턴의 관점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품목코드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삭제 여부를 검토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감광성 필름과 모자다. 우선 2028년 HS에서는 제3702호[롤(Roll) 모양 사진필름]과 제3706호(영화용 필름)의 소호 분류체계가 대폭 간소화됐다.

그 밖에 두께에 따라 두 개의 소호로 나뉘어 있던 제7804호의 납의 시트(sheet)나 스트립(strip)을 하나의 소호로 통합하는 한편, 음극선관 제조용의 유리 외피나 음극선과 부분품에 대한 소호를 삭제했다.

5. 미래의 HS 개정

HS 6단위 소호의 수는 1988년 제정 당시 5,019개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2002년 HS에서는 5,224개까지 늘어났다가 2007년 HS 개정 시 불필요한 코드가 대폭 삭제돼 5,052개로 줄어들기도 했다. 이후 매 개정 때마다 6단위 코드의 수가 증가해 2022년 HS에서는 5,612개에 이르렀고 2028년 HS에서는 역대 개정 중 가장 큰 폭으로 6단위 코드 수가 증가해 5,841개에 달한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코드의 대부분은 FAO 등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본론 부분에서 설명했던 국제기구와 관련된 HS 개정은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WCO와 HS위원회는 대체로 관련된 물품이 국제무역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따지지 않고 이들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방향에 협조해 오고 있다. 향후 제8차, 제9차 개정주기에서도 이들 국제기구의 수요와 요청에 따른 HS 개정은 계속 이뤄질 것이다. 앞으로도 HS 4단위 또는

6단위 코드의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매 개정주기에서 공통적으로 HS 개정안을 가장 활발하게 제출하는 회원국은 EU다. 이번의 제7차 개정주기에서도 EU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중 대부분은 실제 개정까지 이어졌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회원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제8711호의 전기스쿠터의 소호 신설방안을 포함해 EU 다음으로 많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2022년 HS 개정주기에 제8524호(평판디스플레이모듈)의 신설을 제안하는 등 한국 또한 그간 HS 개정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 왔으나 이번 2028년 HS 개정주기에 한국이 새롭게 제안한 내용은 없다. 향후 2033년 HS 개정주기에는 퍼지컬 AI, 로봇 등 글로벌한 주제뿐 아니라 김치의 HS Code 신설 등 로컬 이슈를 포함한 한국의 다양한 개정 제안을 기대해 본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VENT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선착순 도서 증정 이벤트

2026.3.20~소진 시까지



100명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도서 증정

이벤트 안내

진행 기간: 3월 20일(금)~소진 시까지

참여 대상: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꼭 확인해 주세요

-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리며, 주문시기에 따라 도착 예정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부 이상 주문하더라도 증정 도서는 주문자(기업)당 1부씩 보내드립니다.
- 주소 등 개인정보 오기입으로 인해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이벤트는 선착순 증정 이벤트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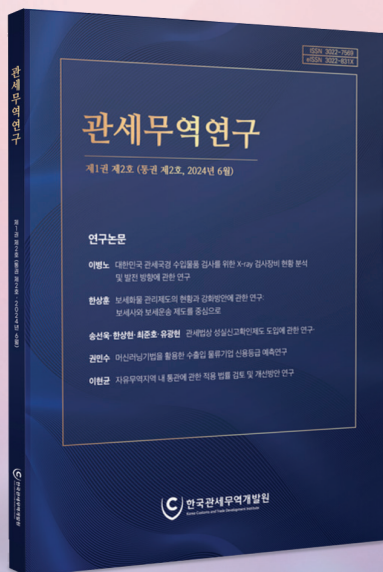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